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Q 폐수 자가측정 주기는?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폐수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방지시설은 없고 1차 처리만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방류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각시설은 1종, 폐수처리시설은 5종입니다. 대기는 주1회 자가측정하기로 되어있는데 폐수 5종사업소의 자가측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측정주기나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질오염물 질에 대하여 필요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폐수처리과정 중 바이패스라인 설치는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폐수처리계통은 집수조, 물리/화학적 처리, 침전조, sand/carbon filter, 방류조를 거쳐 최종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수 발생량이 많지 않아 연속운전이 아닌 간헐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운전하다 보니 최초 가동시 filter를 거쳐 나오는 처리수에 다향의 슬러지(역세척 잔재물 및 스케일)가 포함되어, 방류조로 유입되기 전 By-pass 라인을 집수조로 설치하여 슬러지가 포함된 최초 처리수를 리턴시키려고 합니다. 신규 By-pass 라인 설치를 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A 폐수처리과정에서 바이패스라인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폐수는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계획된 폐수량을 최종 방류구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폐수배출 신고증 명서 상 기재되어 있는 폐수처리 계통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대기 배출시설 해당여부는?

A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공정중에 발생되는 Sour Water가 있습니다. 이 S.W를 저장하는 Sour Water Tank(1,978m³)는 주성분이 물이 98%, 암모니아(NH₃)가 1%, 황화수소(H₂S)가 1%인 경우 대기 배출시설 분류를 25) 저장시설인지 아니면 황화수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6) 그 밖의 배출시설로 분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A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유·무기산에 해당되므로, 농도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2, 나, 26) 규정에 의거, 50m³ 이상인 유·무기산 저장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 및 연료 특성에 관한 자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전자 인계서의 보관은?

A 산업 폐기물(지정, 일반)수집·운반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계서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부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종이 인계서와는 달리 지금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인계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종이 인계서를 출력해서 따로 보관해야 하는지요?

A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으로 폐기물 인계·인수 등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별도로 전자인계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건설폐기물 타지역 처리 가능?

Q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을 한 지역으로 모아서 즉 적환장을 설치해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A 사업장은 포천에, B 사업장은 의정부에, C 사업장은 양주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지역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한곳에 모아둔 후에 업체와 계약을 하면 경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지요? 아니면 발생지역 사업장별로 계약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사업장폐기물이 지역 사업장별로 소규모로 발생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곳에 모아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A 가. 동일한 건설폐기물배출자가 서로 다른 건설현장(A시, B시, C시 3개소 별도의 건설현장별로 각각의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완료한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따른 보관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나.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됨) 다. 건설폐기물은 허가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임시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 운반시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나,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외부의 인근 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사전환경검토 대상여부?

A 해당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A부지는 9,300m², 2003. 9. 19(공장용지) 지목변경 되었고 B부지는 4,644m², 2002. 9. 30(창고용지) 지목 변경되었습니다. 합계면적이 13,944m²이며 추가개발로 증가되는 부지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기부지에 물류창고를 신축할 경우 사전환경검토 대상인지요?

A 환경영화기본법 시행령 별표2.2에 의한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환경검토 대상 개발사업(용도지역별 최소 사전환경검토 대상면적 이상)으로서 물류창고 신축 등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 신규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위주로 사전환경검토서를 간략히 작성하여 사전환경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